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4. 14 선고 2021가단5749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임경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희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1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6. 8. 접수 제403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보험법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97012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2021. 7. 28. 기준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38,742,663원이다.

나. C는 어머니 D이 사망하자 2020. 6. 8.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20. 6. 5. 자매지간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03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시가 7,2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C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E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부 대출 채무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동해시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언니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 C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D가 사망하자 C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형편이 어려운 C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게 배려하여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C가 2008년경 피고에게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채무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와 C 모두 사해의사가 없었다.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편법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2)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와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06가소15424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위 판결금 채무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6차전197012)을 신청,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20. C에게 송달되어 2016. 7.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C는 2021. 10.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6가소154548 판결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였음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154248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7. 12. 21.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하였고, C가 2007. 12. 2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카명629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C가 2014. 5. 1.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고, 2014. 6. 23.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C가 늦어도

재산명시기일인 2014. 6. 23.경에는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154248 판결 결의 존재에 대하여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한 2주를 경과한 2014. 7. 8.에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C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2007년경 채무불이행자 등재결정, 2014년경의 재산명시기일 출석,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6차전197012) 정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편법적으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공시송달의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민아

별지